글 싣는 순서

◉ 대회사 ····· 3

◉ 남북 공동선언 전문 ····· 4

◉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규약 ····· 5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규약 ····· 7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 규약 ····· 10

◉ 615 경기본부 체계 및 임원 ····· 14

◉ 2005년 사업일지 ····· 17

◉ 안건 1. 규약개정의 건 ····· 21

◉ 안건 2. 2005년 사업보고 및 평가안 ····· 25

◉ 안건 3. 2005년 결산보고 및 심의의 건(별지참조) ····· 31

◉ 안건 4. 임원 선출의 건 ····· 32

◉ 안건 5. 회비 재조정 건 ····· 33

◉ 안건 6. 2006년 사업계획 심의 및 승인의 건 ····· 35

◉ 안건 7. 2006년 예산심의 및 승인의 건(별지참조) ····· 42

별지문서 : 2005년 결산보고안
2006년 예산안

정기총회 식순

1. 여는 순서

- 내빈 소개
- 인사말(한명수 상임대표)
- 축사1(손학규 경기도지사)
- 축사2(백낙청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

2. 본 회의

- 개회 선언
- 성원보고
- 서기 및 사찰 선출
- 회순 통과
- 안건 심의
  - 안건1 : 규약개정 건
  - 안건2 : 2005년 사업보고 및 평가안 심의의 건
  - 안건3 : 2005년 결산보고 및 심의의 건
  - 안건4 : 임원선출의 건
  - 안건5 : 회비 재조정 건
  - 안건6 : 2006년 사업계획 심의 및 승인의 건
  - 안건7 : 2006년 예산심의 및 승인의 건
- 서기록 발표
- 폐회 선언

대회사

6.15 남북공동선언 전문

6.15 남 북 공 동 선 언 전 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 대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 정 일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규약

1조.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의 성격과 목적

1)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약칭 6.15민족공동위원회)는 6.15 공동선언을 실천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룩하려는 남, 북, 해외의 각 정당, 단체, 인사들을 폭넓게 망라하기 위한 상설적인 통일운동연대조직이다.
2)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는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민족공동행사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민간통일운동을 조직하고 집행해나간다

2조.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의 조직 원칙과 구조

1)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는 6.15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남과 북, 해외의 정당, 단체, 인사들로 구성한다.
2)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는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된다.
3)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는 서로의 활동을 존중하며, 민족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활동해나간다.
4)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는 부문별, 지역별 조직들을 둘 수 있다.

3조.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의 운영

1)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는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회의와 공동위원장회의, 실무회의를 통해 운영한다.
2)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회의는 연 1-2회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회의는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소집한다.
   (2)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회의에서는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가 주최하는 주요 민족통일행사들과 공동의 통일운동 방향 등을 토의, 결정한다.
3)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는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 위원장이 협의하여 소집하며,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의 사업 및 운영과 관련된 주요 문제들을

조정하고 합의한다.

4)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회의와 공동위원장회의에서 채택된 결정과 합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실무회의를 운영한다.

5)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는 각기 실정에 맞게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만들 수 있다.

4조.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의 공동사무국

1)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는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공동사무국을 둔다.

2)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공동사무국의 설치시기, 구성 및 기타 운영과 관련한 문제들은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 위원장의 합의에 따른다.

5조.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규약의 개정

규약의 개정은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회의가 한다.

이 규약은 2005년 12월 10일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회의에서 통과 즉시 발효한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규약(안)

제정 2006년 2월 15일

제 1 조 성격과 목적

1.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원회)는 6.15공동선언을 실천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룩하려는 정당, 종교, 단체, 인사들을 폭넓게 망라하기 위한 상설적인 통일운동연대 조직이다.
2. 6.15남측위원회는 남북해외 공동의 민족공동행사와 각계각층 교류협력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민간 통일운동을 조직하고 집행해나간다.

제 2 조 운영 원칙

1. 6.15남측위원회는 참가한 단체와 개인의 연대와 합의의 정신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된다.
2. 6.15남측위원회는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와의 합의를 존중하고 성실히 실천한다.

제 3 조 공동대표회의,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① 공동대표회의

1. 6.15남측위원회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100명 내외의 공동대표로 구성되는 공동대표회의를 둔다.
2. 공동대표회의는 6.15남측위원회의 주요 활동 및 운영 방향을 토의 결정한다.
3. 공동대표회의에서는 상임대표, 명예대표, 운영위원, 공동대표, 감사 등 임원을 선출한다.
4. 공동대표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공동대표 1/5 이상의 발의나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상임대표의 요청에 의해 소집된다.
5. 공동대표회의에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6. 공동대표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소속단체의 집행책임자 또는 다른 공동대표에게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1. 6.15남측위원회는 공동대표 중에서 선출된 45인 이내의 운영위원을 둔다.
2.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회의 안건을 심의, 상정하며 남측위원회의 활동방향과 사업계획,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3. 운영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다른 운영위원에게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집행위원회

1. 6.15남측위원회는 집행위원회를 둔다.
2. 집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안건을 심의, 상정하며 공동대표회의 및 운영위원회에서 합의 결정한

사항의 집행을 책임진다.

3. 집행위원회를 총괄하기 위해 약간 명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두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공동집행위원장단은 집행위원회를 총괄하며 상임대표 또는 집행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4. 집행위원회는 공동집행위원장단, 정책위원회 상임위원 중 1인, 특별위원회가 선임한 집행위원, 부문계층별 본부의 집행책임자, 광역시도별 본부의 집행책임자, 분야별위원회의 집행책임자, 대변인실의 집행위원, 사무처장단 등으로 구성한다.

제 4조 상임대표, 명예대표, 고문, 상임고문, 감사

① 상임대표 및 명예대표

1. 6.15남측위원회는 1인의 상임대표와 약간 명의 명예대표를 둔다.
2. 상임대표는 대내외적으로 6.15남측위원회를 대표하며, 6.15남측위원회의 활동과 운영을 총괄한다. 상임대표는 필요시 자문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고문 및 상임고문

1. 6.15남측위원회는 고문과 상임고문을 두며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③ 감사

1. 6.15남측위원회는 업무와 재정을 감독할 2 -3인의 감사를 둔다.

제 5조 부문계층별, 지역별 본부

① 부문계층별 본부

1. 6.15남측위원회는 부문계층별 본부를 둘 수 있다.
2. 6.15남측위원회의 소속단체나 인사가 부문계층별 본부를 구성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공동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부문계층별 본부의 활동 및 운영은 남측위원회의 운영원리와 규약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② 광역시도별 본부

1. 6.15남측위원회는 광역시도별 본부를 둘 수 있다.
2. 6.15남측위원회의 소속단체나 인사가 광역시도별 본부를 구성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공동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광역시도별 본부의 활동 및 운영은 6.15남측위원회의 운영원리와 규약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제 6조 정책위원회, 특별위원회, 분야별위원회, 대변인

① 정책위원회

1. 6.15남측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직속으로 정책위원회를 둔다.
2. 정책위원회는 6.15남측위원회의 활동방향에 대한 제반 정책적 내용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며, 토론회와 포럼 등 각종 형식의 정책 사업을 수행한다.
3. 정책위원회의 장은 공동대표 중에서 선출하며, 약간 명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1. 6.15남측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특별위원회는 공동대표회의 또는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특정 과제를 원활히 추진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3. 특별위원회의 장은 공동대표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분야별 위원회

1. 6.15남측위원회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 총무, 조직, 지역, 홍보, 국제연대 등 분야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 설치는 집행위원회의 제안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다.

④ 대변인

1. 6.15남측위원회는 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대변인과 약간 명의 부대변인을 둘 수 있다.
2. 대변인은 공동대표 중에서 선출한다.

제 7조 사무처

1. 6.15남측위원회는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는 집행 상의 제반 실무적 과제를 수행한다.
3. 사무처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사무처장과 약간 명의 협동사무처장을 둔다.
4. 사무처장은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적정인원의 상근 혹은 비상근의 간부 및 간사를 채용한다.

제 8조 6.15민족공동위원회 남측대표단 구성

1. 6.15민족공동위원회 회의 및 공동행사에 참가하는 남측대표단은 공동대표회의에서 정한다.
2. 6.15민족공동위원회 실무회의에 파견될 대표단은 상임대표가 정한다.

제 9조 재정

1. 6.15남측위원회의 재정은 소속단체 및 인사들의 회비와 후원금, 행사참가비, 기타 등으로 충당한다.
2. 6.15남측위원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연 1회 감사를 통해 재정을 감독한다.

부 칙

1. 이 규약은 공동대표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발효된다.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 경기본부(이하 6.15공동위원회 경기본부) 운영규약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 경기본부(약칭 6.15공동위원회 경기본부)라 한다.

제2조(목적) 6.15공동위원회 경기본부는 민족의 통일강령인 6.15 공동선언 실천을 통해 자주적인 통일조국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6.15공동위원회 경기본부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①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대중적 실천을 전개한다.

② 한반도와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전쟁을 반대한다.

③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 하에 상호 존중하는 통일조국 건설을 위해 노력한다.

④ 경기본부는 남측준비위원회 사업에 적극 결합하여 활동한다.

제 2 장 회 원

제4조(구성)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자 하는 경기지역의 제 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① 경기지역 단위의 제 단체 및 개인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은 시, 군 단위 본부를 회원으로 한다.

제5조(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①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급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및 표결할 권리

② 각종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을 권리

제6조(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① 규약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

② 사업 및 활동에 참가할 의무와 각종 사업에 대해 보고할 의무

③ 재정(회비 및 분담금) 납부의 의무

제 3 장 회 의

제1절 대표자회의

제7조(구성) 최고의결단위로 상임대표 및 참가단체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제8조(소집)

① 정기회의는 상, 하반기 2회로 한다.

② 필요시 대표자 1/3이상 발의와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소집한다.

제9조(기능)

① 규약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③ 사업 계획 결정 및 사업보고 승인에 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 승인에 대한 사항

제2절 운영위원회의

제10조(구성) 상임대표 및 운영위원, 특별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11조(소집)

① 정기 회의는 분기별로 한다.

② 필요시 운영위원 1/3이상 발의와 상임대표의 소집으로 개최한다.

제12조(기능)

① 대표자 회의 준비와 상정안건 심의 및 수임사항 처리

② 가입, 탈퇴 및 사고에 관한 사항

③ 의무금과 특별 분담금 책정에 과한 사항

⑤ 공동집행위원장, 상임집행위원장 및 집행간부 인선에 대한 건

⑥ 상설위원회, 각종 특별기구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⑦ 고문 및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⑧ 예산의 조정과 전용

⑨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사항

⑩ 기타 제반 일상사업의 계획 및 방침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3절 특별위원회

제13조(구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공동대표자 회의를 통해 구성할 수 있다.

제4절 집행위원회

제14조(구성과 소집)

① 운영위에서 추천된 공동집행위원장단 회의로 한다.

② 조직, 정책, 홍보 등 필요한 부서는 운영위 의결을 거쳐 둘수 있다.

③ 집행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집행책임자 연석회의는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기능)

① 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회 수임사항 집행

② 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회 개최 준비와 상정안건 작성

③ 일상 업무 집행과 관련된 주요 방침 심의, 집행

④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절 자문기구

제16조(구성) 각계 원로 및 지도급 인사들로 구성한다.

① 각계 원로들로 구성된 고문단을 둔다.

② 각계 지도급 인사들로 지도위원을 둔다.

③ 의원단을 둔다.

제 4 장 임 원

제17조(임원) 임원은 상임대표, 공동대표, 운영위원, 감사를 말한다.

제18조(선출과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상임대표

- 상임대표는 경기본부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한다.
- 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상임대표 궐위 시에는 그 대행을 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공동대표

- 지역 본부장(시, 군)과 참가단체 대표로 한다.

③ 운영위원

- 지역본부장(시, 군)과 특별위원장 그리고 가입단체 대표자 가운데서 부문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약간 명을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한다.

④ 감사

- 2인으로 하고 사업 및 재정 감사를 년1회로 하여, 매년 상반기 열리는 정기 대표자 회의에 감사 결과를 보고 한다.

제19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 장 사 무 처

제20조 (사무처)

① 6.15공동위원회 경기본부의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장은 공동 집행위원장단의 추천으로 상임대표가 임명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인준 한다.
③ 사무처에 약간명의 간사를 둔다.

제 6 장 재 정

제21조(수입 및 지출) 경기본부의 재정은 가입단체의 의무금과 후원회비, 사업분담금 및 기 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대표자회의에서 정한 예산에 따라 운영한다.

제22조(의무금의 책정) 의무금은 해당 조직의 의결을 거쳐 대표자회의에서 책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약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615경기본부 체계 및 임원(2월 현재)

■ 고 문 (현재 24인)

김경희 (수원여성의전화이사)
김진춘목사 (매원교회)
박기래 (안산통일학교교장)
석달윤 (통일운동가)
윤기석목사 (기독교장로회증경총회장)
이기형 (시인)
지원스님 (보련사)
표문태 (민족문학가)
효림스님 (보광사)
문학진 (국회의원)
안민석 (국회의원)
최 성 (국회의원)
김추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경기지회장)
민경학 (전 전농도연맹의장)
백규현 (여주세종신문사이사장)
안재구 (범민련경기인천연합고문)
이태일 (경기대학교 총장)
임병규 (남양주향토사료관관장)
정춘자 (경기여성연대고문)
최순영 (경기여성연대고문, 국회의원)
한성건 (경기도 IT협의회 의장)
이기우 (국회의원)
이원영 (국회의원)
강성종 (국회의원)

■ 지도위원(현재 10인)

강홍구 (동두천시민연대대표)
김동균 (변호사)
수산스님 (대승원)
이선희 (아주대사회학부교수)
임영인신부 (나눔의 집)
김경수 (선문대교양학과교수)
박공우 (변호사)
송재룡 (경희대사회학과교수)
유은옥 (경기여성연대 공동대표)
한옥자 (경기여성단체연합감사)

■ 의원단(현재 7인)

김현욱 (경기도 의원)
신종철 (경기도 의원)
박미진 (경기도 의원)
임봉규 (경기도 의원)
장경순 (경기도 의원)
김부광 (경기도 의원)
하수진 (경기도 의원)

■ 상임대표 : 한명수 목사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이사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공동대표, 세계밀알 이사장, 창훈대교회 원로 목사)

■ 참가 단체(현재 48개)

번호	단 체 명	번호	단 체 명
1	615남측위원회 남양주본부	25	기장경기노회통일위원회
2	615남측위원회 성남본부	26	남북공동선언경기실천연대
3	615남측위원회 수원본부	27	녹색자치경기연대
4	615남측위원회 안산본부	28	대한성공회남부교무구
5	615남측위원회 오산본부	29	민족문제연구소경기남부지부
6	615남측위원회 하남본부	30	민족예술인총연합회경기지회
7	(사) 대한불교청년회경기지구	31	민주노동당경기도당
8	(사)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	32	민주노총경기도본부
9	경기경실련	33	범민련경인연합
10	경기남부총련	34	세계평화여성연합경기남부지부
11	경기도교회협의회	35	세계평화청년연합경기남부지부
12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36	안양군포의왕통일연대
13	경기동부총련	37	열린우리당 경기도당
14	경기민족민주청년단체협의회	38	원불교경기인천교구
15	경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39	인천경기기자협회
16	경기민중연대	40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
17	경기복지시민연대	41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경기연합
18	경기불교연합회(준)	42	전농경기도연맹
19	경기여성단체연합	43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20	경기여성연대	44	천도교수원교구
21	경기KYC	45	천주교수원교구가톨릭농민회
22	경기지역공부방연합회	46	천주교수원교구민족화해위원회
23	경기환경운동연합	47	한국노총경기본부
24	공무원노조경기본부	48	흥사단경기도협의회

■ 참관 단체

번호	참관단체	번호	참관단체
1	615군포본부(준)	4	615남측위원회 용인본부(준)
2	615남측위원회 부천본부(준)	5	615이천본부(준)

3 615안양본부(준)

6 615남측위원회 화성본부(추)

■ 운영위원(현재 18인) <운영위원은 이후 더 확대해 나간다>

김현미 (열린우리당경기도당 위원장)
박우석 (경기민언련 공동대표)
이경환 (원불교경인교구 사무국장)
이태형 (범민련 경인연합 의장)
정형주 (민주노동당경기도당 위원장)
최승회 (경기남부총련 의장)
장창원 (615남측위원회 오산본부 공동대표)
최진미 (615남측위원회 하남본부상임공동대표)
양홍관 (615남측위원회 남양주본부 운영위원장)
김양현 (경기민청 의장)
박석균 (전교조경기지부 지부장)
배월수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상무 (민주노총 경기본부 본부장)
이화수 (한국노총 경기본부 회장)
노세극 (6.15남측위원회 안산본부 상임공동대표)
한도숙 (전농경기도연맹 의장)
이상헌 (615남측위원회 수원본부 상임대표)
윤병일 (615남측위원회 성남본부 상임공동대표)

■ 공동집행위원장(현재 5인)

석진희 (경기여성연대 사무국장)
윤용배 (경기민중연대집행위원장)
홍안나 (범민련경인연합사무국장)
이주현 (종단실무책임자)
홍원식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사무처장)

■ 사무처장

안영욱

615경기본부 2005년 사업 일지

■ 4월

- 4월 20일 대표자회의
- 4월 23일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4월 25일 1차 운영위원회 회의
- 4월 27일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4월 29일 6.15공동위원회 경기본부 발족

■ 5월

- 5월 6일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5월 12일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5월 13일 6.15공동위원회 안산본부 발족
- 5월 16일 2차 운영위원회 회의
- 5월 23일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5월 25일 615경기본부 1차 집행책임자 연석회의
- 5월 26일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5월 26일 3차 운영위원회 회의
- 5월 26일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행사에 상임대표님 참석
- 5월 31일 1차 공동대표자 회의
- 5월 31일 615남측준비위 지역본부 사무처장단 간담회

■ 6월

- 6월 2일 6.15공동위원회 경기본부 고문, 지도위원과의 간담회
- 6월 3일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6월 8일 615공동위 남측준비위 비상 공동대표자 회의
- 6월 9일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6월 10일 4차 운영위원회 회의
- 6월 10일 615남양주본부 건설을 위한 615경기본부와의 간담회
- 6월 14일 615경기본부 주최로 6.15공동선발표 5돌 기념식 진행
- 6월 14-17 615민족통일대축전에 대표단 2명 파견
- 6월 19일 6.15공동위원회 수원본부 발족
- 6월 23일 공동집행위원자 회의

- 6월 25일　6.15공동위원회 하남본부 발족
- 6월 28일　6.15공동위원회 성남본부 발족

■ 7월

- 7월 4일　5차 운영위원회 회의
- 7월 7일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7월 15일　6.15공동위원회 오산본부 발족
- 7월 20일　공동집행위원장단 수련회
- 7월 26일　615경기본부 2차 집행책임자 연석회의

■ 8월

- 8월 2일　615공동위 남측준비위 7인소위와 지역본부대표자와의 간담회
- 8월 3일　615공동위 남측준비위 3차 집행위원회 회의
- 8월 3일　615공동위 남측준비위 2차 공동대표자 회의
- 8월 5일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8월 8일　백두한라민족통일대행진 평택 입성 환영식
- 8월 10일　615경기본부 3차 집행책임자 연석회의
- 8월 11일　광복 60주년 맞이 수원방송 경기통일대토론회 참석
- 8월 12일　광복 60주년 기념식 및 기념강연
- 8월 13일　6.15공동위원회 남양주본부 발족
- 8월 14-17　815민족대축전 참가
- 8월 29일　615공동위 남측준비위 4차 집행위원회 회의
- 8월 29일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9월

- 9월 5일　7차 운영위원회 회의
- 9월 9일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9월 21일　615남측위원회 지역본부 집행위 회의
- 9월 26일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9월 30일-10월 1일 615남측위원회 워크샵

■ 10월

- 10월 4일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10월 5일　친일잔재청산특위 구성을 위한 민족문제연구소와의 1차 간담회
- 10월 10일　8차 운영위원회 회의
- 10월 17일　조직확대소위 1차 회의
- 10월 18일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10월 19일　친일잔재청산특위 구성을 위한 민족문제연구소와의 2차 간담회

- 10월 25일　이천 성공회교회의 오케스트라 창단식에 참석
- 10월 26일　민족문제연구소 월례강연회 참석
- 10월 28일　615오산본부 일일주점에 참석

■ 11월

- 11월　1일　조직확대소위 2차 회의
- 11월　2일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11월　4-5　2005년 615경기본부 수련회
- 11월 11일　조직확대소위 3차 회의
- 11월 11일　615남측위원회 지역집행위원장 간담회
- 11월 11일　615남측위원회 조직발전특별위원회 1차 회의
- 11월 17일　을사조약 날조 100년 규탄 기자회견
- 11월 21일　6.15남측위원회 조직발전특별위원회 2차 회의
- 11월 29일　615남측위원회 5차 집행위원회 회의

■ 12월

- 12월　2일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12월　6일　6.15남측위원회 3차 공동대표자회의
- 12월　6일　6.15이천본부 준비를 위한 간담회
- 12월　8일　6.15경기본부 9차 운영위원회 회의
- 12월　9일　안양군포의왕통일연대 송년의 밤 참석
- 12월 15일　6.15남측위원회 조직발전특별위원회 3차 회의
- 12월 16일　안산통일포럼에서 진행하는 <평화통일지도자과정> 총동문회 창단식 축사
- 12월 27일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12월 29일　6.15남측위원회 조직발전특별위원회 4차 회의
- 12월 30일　6.15경기본부 2005년 송년의 밤

■ 06년 1월

- 1월　4일　6.15경기본부 10차 운영위원회 회의
- 1월　9일　6.15남측위원회 지역본부 집행위 회의
- 1월 12일　6.15고양본부 건설을 위한 모임
- 1월 17일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1월 18일　6.15남측위원회 조직발전특별위원회 5차 회의

■ 2월

- 2월　2일　6.15남측위원회 6차 집행위원회 회의
- 2월　7일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2월 15일　6.15남측위원회 제4차 공동대표자 회의

- 2월 15일　6.15남측위원회 1주년 기념행사
- 2월 21일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2월 21일　경기도 JC 회장과 약속
- 2월 23일　6.15경기본부 11차 운영위원회 회의

안건1>

615경기본부 규약 개정안

[주문사항] 615공동위원회 경기본부의 규약을 검토하고 개정하여 주십시오.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 경기본부(이하 6.15공동위원회 경기본부) 규약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 경기본부(약칭 6.15공동위원회 경기본부)라 한다.

<개정안>
제1조(명칭)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약칭 6.15 경기본부)라 한다.

제2조(목적) 6.15공동위원회 경기본부는 민족의 통일강령인 6.15 공동선언 실천을 통해 자주적인 통일조국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6.15공동위원회 경기본부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①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대중적 실천을 전개한다.

② 한반도와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전쟁을 반대한다.

③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 하에 상호 존중하는 통일조국 건설을 위해 노력한다.

④ 경기본부는 남측준비위원회 사업에 적극 결합하여 활동한다.

제 2 장 회 원

제4조(구성)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자 하는 경기지역의 제 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① 경기지역 단위의 제 단체 및 개인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은 시, 군 단위 본부를 회원으로 한다.

제5조(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①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급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및 표결할 권리

② 각종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을 권리

제6조(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① 규약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

② 사업 및 활동에 참가할 의무와 각종 사업에 대해 보고할 의무

③ 재정(회비 및 분담금) 납부의 의무

제 3 장 회 의

제1절 대표자회의

제7조(구성) 최고의결단위로 상임대표 및 참가단체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제8조(소집)

① 정기회의는 상, 하반기 2회로 한다.

② 필요시 대표자 1/3이상 발의와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소집한다.

제9조(기능)

① 규약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③ 사업 계획 결정 및 사업보고 승인에 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 승인에 대한 사항

제2절 운영위원회의

제10조(구성) 상임대표 및 운영위원, 특별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11조(소집)

① 정기 회의는 분기별로 한다.

② 필요시 운영위원 1/3이상 발의와 상임대표의 소집으로 개최한다.

제12조(기능)

① 대표자 회의 준비와 상정안건 심의 및 수임사항 처리

② 가입, 탈퇴 및 사고에 관한 사항

③ 의무금과 특별 분담금 책정에 과한 사항

⑤ 공동집행위원장, 상임집행위원장 및 집행간부 인선에 대한 건

⑥ 상설위원회, 각종 특별기구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⑦ 고문 및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⑧ 예산의 조정과 전용

⑨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사항

⑩ 기타 제반 일상사업의 계획 및 방침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3절 특별위원회

제13조(구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공동대표자 회의를 통해 구성할 수 있다.

제4절 집행위원회

제14조(구성과 소집)

① 운영위에서 추천된 공동집행위원장단 회의로 한다.

② 조직, 정책, 홍보 등 필요한 부서는 운영위 의결을 거쳐 둘 수 있다.

③ 집행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집행책임자 연석회의는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기능)

① 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회 수임사항 집행

② 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회 개최 준비와 상정안건 작성

③ 일상 업무 집행과 관련된 주요 방침 심의, 집행

④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절 자문기구

제16조(구성) 각계 원로 및 지도급 인사들로 구성한다.

① 각계 원로들로 구성된 고문단을 둔다.

② 각계 지도급 인사들로 지도위원을 둔다.

③ 의원단을 둔다.

제 4 장 임 원

제17조(임원) 임원은 상임대표, 공동대표, 운영위원, 감사를 말한다.

제18조(선출과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상임대표

- 상임대표는 경기본부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한다.
- 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상임대표 궐위 시에는 그 대행을 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공동대표

- 지역 본부장(시, 군)과 참가단체 대표로 한다.

③ 운영위원

- 지역본부장(시, 군)과 특별위원장 그리고 가입단체 대표자 가운데서 부문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약간 명을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한다.

④ 감사

- 2인으로 하고 사업 및 재정 감사를 년1회로 하여, 매년 상반기 열리는 정기 대표자 회의에 감사 결과를 보고 한다.

제19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 장 사 무 처

제20조 (사무처)

① 6.15공동위원회 경기본부의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장은 공동 집행위원장단의 추천으로 상임대표가 임명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사무처에 약간명의 간사를 둔다.

제 6 장 재 정

제21조(수입 및 지출) 경기본부의 재정은 가입단체의 의무금과 후원회비, 사업분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대표자회의에서 정한 예산에 따라 운영한다.

제22조(의무금의 책정) 의무금은 해당 조직의 의결을 거쳐 대표자회의에서 책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약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안건2>
615경기본부 2005년 사업 평가

[주문사항] 2005년 사업보고 · 평가를 심의해 주십시오.

1. 2005년 통일운동에 대한 총평

1> 6.15 공동위원회를 건설함으로써 전민족적인 6.15 실천의 거점을 형성, 통일운동의 진보를 위한 새 시대를 열게 되었다.
공동선언 발표 5돌, 광복 60주년을 맞이하여 남북해외가 함께 하는 6.15 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를 건설한 것은 기간의 성과를 한 단계 비약적으로 높여내기 위한 우리민족 전체의 주동적 조취였다. 이로 인해 행사중심, 기념일 사업 중심이 되던 공동선언 이행사업을 일상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조직적 환경이 마련되었다.

2> 6.15, 8.15 등 민족 공동의 행사를 계기로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제 2의 6.15 시대를 열어내었다.
공동선언이 발표되고 처음으로 6.15 및 8.15 행사를 계기로 관과 민이 함께 하는 그야말로 전민족적인 대회가 성사되었으며, 우리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통일을 일구어가겠다는 “우리민족끼리”의 원칙이 재확인되면서 제 2의 6.15 시대를 열어냈다.
또한 이 대회와 6.17 특사면담을 계기로 그동안 단절되었던 남북 당국자간의 관계가 다시금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민간급 교류사업의 폭도 이전에 비해 매우 구체적이며 다양해진 형태로 발전되었다.

3> 명칭개정, 운영규약 제정 등을 통해 상설적인 전민족적 통일운동 기구로서의 위상을 더욱 분명히 함으로써 이후 민족통일을 위한 공조의 수준을 더욱 높여나갈 전민족적인 자세를 갖추어 내었다.

2. 6.15 경기본부 2005년 활동 평가

1> 조직사업 영역

① 진행 사업

■ 6.15 경기본부 건설을 위한 경기지역 제 단체, 인사들과의 사전 간담회 및 준비위 회의
- 6.15 경기본부 건설을 위해 각 부분별 조직들과의 사전 간담회를 진행하고 건설을 위한 경기지역 제 단체 간담회를 총 4차례 진행하였으며, 기획소위를 두고 조직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6.15 경기본부가 경기지역의 제 단체 및 세력을 아우르는 통일운동체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하였다.

■ 6.15 경기본부 발족식
- 경기지역을 대표하는 각계의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지역 최초의 광범위한 대중적인 통일 운동체를 건설하고 이를 대외에 공표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 조직확대 소위 건설 및 미조직지역에 대한 간담회 사업
- 배월수 운영위원을 조직확대소위장으로 인준, 조직확대 소위 건설하고 고양과 이천 등에서 간담회 사업을 조직하여 6.15 지역 본부 건설의 중요성을 해설하고 건설을 추동력이 되고 있다.

② 성과점

■ 6.15 경기본부의 건설과 시군본부 건설로 경기지역 통일운동을 일상적 근거지를 마련하게 되었다.
- 경기지역 제 단체와 인사들의 자발적인 통일운동의 열의에 기초해 탄생한 경기본부는 중앙기구의 지역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출발한 것 자체로서도 전민족적 통일운동기구를 완성시켜 나가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 민족의 행보에 발맞추어 경기지역에서도 발빠르게 공동위원회 건설을 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지역 본부를 결성함으로써 경기지역 통일운동을 일상화 하고 발전시켜낼 수 있는 토대를 확보했다.
- 또한 6.15 경기본부가 건설되고 시군단위로의 건설을 추동해 내면서 6.15 공동선언을 보다 넓게 실천적인 운동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전환적인 계기로 되었다.

■ 안정적인 조직운영 체계를 갖추어 냄으로써 확대,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 운영위원회 회의, 공동집행위원장단 회의, 집행위원회 회의 등 경기본부를 운영해 나가는 운영체계를 안정적으로 꾸려내고 정기적인 회의구조를 정착시켜냄으로써 상설기구로서의 체모를 갖추게 되었다.
6.15나 8.15 행사를 위한 한시적인 운영이 아닌 일상적 운영의 토대를 형성하고 상임대표를 중심으로 운영위 회의를 꾸준하게 가져간 것은 조직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기초를 다져낸 것이라 할 수 있다.
- 사무실을 마련하고 상근 활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어 냄으로써 이후 경기본부가 내용적, 조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 조직확대 소위의 건설과 활동은 경기본부 확대의 추동력으로 되고 있다.
- 조직확대 소위를 건설함으로써 6.15 공동선언과 민족의 통일에 합의하는 경기지역의 제 세력들을 조직적으로 묶어낼 수 있는 활동력을 갖게 되었다. 이는 공동선언을 합의 확산하고 민족의 통일을 일구어 가는 일이 매우 조직적인 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라는 측면에서 성과적이라 할 수 있다.
- 또한 미조직지역에 대한 간담회 사업 등 조직화 사업을 조직확대소위 건설과 함께 적극화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통일운동을 풀어나갈 역량이 낮은 지역에서도 공동위원회 지역본부를 건설해 낼 가능성과 추진력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이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③ 극복점

■ 6.15 경기본부를 경기지역의 규모에 맞는 조직으로 더욱 확대해야 한다.
- 6.15 경기본부를 더욱 확대하고 경기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통일운동 조직으로 거듭 발전해 나가야 할 요구가 나선다.
31개 시군단위를 아우르는 경기도의 규모에 맞게 경기본부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조직을 포괄하고, 미조직 시군단위의 조직건설 또한 더욱 빠른 속도로 추동해 내야 한다. 조직확대소위의 활동을 정상화, 안정화하고 조직확대사업에서 미진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 또한 상설적 기구로서의 위상에 대한 이해가 낮음으로 나타나는 일부 단체들의 이탈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 이는 경기본부의 일상적 통일사업의 정형을 창출하고 단체들의 소속감과 결속력을 높여내는 문제와도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 시, 군단위 본부들과의 연계성을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
- 실질적인 대중들과의 접촉면을 가지고 있는 6.15 시, 군 본부의 사업과 활동을 적극 방조하고, 시군본부와 함께 벌여나갈 수 있는 사업을 개발, 전개하여야 6.15 경기본부의 대중적 성과도 높여나갈 수 있다.
- 또한 시, 군단위 집행책임자들과의 적극적인 논의 구조를 개발하여 상시적으로 경기본부의 사업과 활동이 토론, 점검, 평가 될 수 있도록 해야 경기본부로의 결합력을 높여 나갈 수 있다.

■ 불안정한 집행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 경기본부의 사업을 안정화하고, 정형화하는데 있어 집행단위의 역할을 더욱 높일 것이 요구된다. 하반기 사업이 계획한 대로 거의 집행되지 못한 이유는 사업의 담당자가 분명히 서있지 못하면서 그 책임소재가 모호했기 때문이다. 과도기적인 면을 극복하고 상설기구로서 역할을 높여내기 위해서는 공동집행위원장단의 역할과 활동의 영역을 분명히 하고, 집행력을 높여내는 것이 필수적인 요구라 할 수 있다.
- 더불어, 작년 8.15 민족통일대회와 함께 했던 남북 축구대회에서와 같은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무집행력을 보강하여 지역과 부문에 대한 총화력과 유사시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낼 것이 요구된다.

■ 재정구조를 개선하고 안정화해야 한다.

- 경기본부의 소속단위 월 회비 납부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상근비, 일상운영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타 여러 행사나 사업비는 별도의 특별회비로 충당해야 하는 조건이므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재정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 또한 소속 단체들의 회비 납부 부담으로 인해 파생되는 결속력의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구조를 안정화하기 위한 별도의 재정사업이 요구된다.

2> 대중사업 영역

① 진행사업

■ 6.15 5돌 기념행사
- 경기지역에서 615공동선언 5주년을 경기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기념식을 성대하게 진행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며 경기지역 각계 인사들과 함께 공동선언 5돌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성과적인 행사로 진행되었다.

■ 8.15 참가 사업 및 각 시별 통일행사
- 광복 60주년에 맞추어 각 시별에서 통일노래자랑, 통일영화제, 통일한마당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었고 8.15민족통일대회에 2000여명의 경기도민이 참여함으로 6.15공동선언을 더욱 대중화하고 평화의 바람을 만들어 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 북녘 문화유적 답사 및 아리랑 공연 참관 사업 (평양방북 사업)
- 6.15 민족공동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사업은 아니었으나, 6.15 경기본부가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 전개한 사업으로서 북을 이해하고 민족의식을 드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사업이었다.

■ 경기본부 송년 모임
- 6.15 경기본부 1년간의 활동을 되돌아보는 친선 모임으로 진행되었으며, 한해의 통일운동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② 성과점

■ 각종의 통일행사를 경기도 및 시군단위에서 벌여냄으로써 6.15 경기본부가 통일운동의 실천적 지위를 확보했다.
- 6.15 기념행사, 8.15 대회 참가조직사업 등 굵직한 통일행사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6.15 이행을 위한 실질적이며 실천적인 기구로서 자기 자리를 확보해 나갔다.
- 각계 인사와 단체가 함께한 6.15 기념대회, 시군단위별로 다양하게 전개된 6.15, 8.15 기념 통일행사, 2000여명 가까이 참가했었던 8.15 민족대축전, 북녘 문화유적 답사 및 아리랑 공연 관람을 위한

평양 방문 등 등 통일행사를 적극 벌여냄으로써 통일운동의 대중화, 일상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 또한 경기본부 및 각 시 군 본부가 그 실천의 거점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그간 통일운동이 활발하지 못했던 시군지역에서도 6.15 본부가 결성됨으로 인해 금강산 관광, 지역별 특성에 맞게 전개된 통일행사(노래자랑, 기념행사) 등의 사업이 활발해 지면서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통일운동으로 그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③ 극복점

■ 행사위주의 사업을 극복하고 일상운동의 정형을 만들어내야 한다.
- 6.15 공동선언을 지지 이행하고 경기도민들과 함께 벌여나갈 수 있는 일상적 통일운동의 영역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경기본부 및 시군단위 본부가 상설기구, 일상적 통일운동기구로서 자리매기 하기 위해서는 도와 시군지역의 특성에 맞는 통일사업들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지역민과 제 세력들을 추동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 사업의 영역을 다양화해야 한다.
- 경기본부가 실질적으로 통일을 앞당겨 가는 전민족적 조직의 지역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각종의 통일행사, 사업을 벌여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민족끼리” 공조를 높여나가는데 장애가 되는 법적, 제도적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여론사업 또한 적극 벌여나가야 한다.

■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지역에서 더욱 폭넓은 통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에 대한 요구가 해결되어야 한다.
- 경기본부의 결성으로 활발해진 경기지역 통일운동의 열기를 이어 관과의 협력적 관계를 뚫어내고 새로운 높이에서 통일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결성이후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과 함께 하는 통일운동을 만들어 나가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기본부 자체의 역량을 더욱 성숙시켜 나가야 할 과제 또한 남아있는 것이다.

■ 매 사업에서 6.15 정신을 대중적으로 확산하고 민족공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 행사 위주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매 사업마다 그 의의를 대중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며, 6.15 정신 즉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을 합의 확산하고 민족공조의 수준을 높여가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야 한다.

3> 여론 선전 사업 영역

① 진행사업

■ 8.15 통일 대토론회

■ 을사늑약 100년 대일 규탄 기자회견

■ 북한인권국제대회에 대한 공동위원회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촉구공문 발송
- 반북 대결적 관점으로 서울에서 벌어진 북한인권국제대회에 대해 남측위원회 차원의 전국적이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남측위원회에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에 대해 촉구하는 촉구공문을 발송하였다.

② 성과점

■ 시기적절한 토론회, 기자회견 등의 대시민 여론화 사업을 벌여내었다.
- 수원방송과의 공동 주관의 통일 대토론회를 8.15 행사 주간에 배치하고 경기본부 운영위원들이 참가하여 공동선언 5주년의 의미와 민족통일의 중요성을 알려내는데 적극적으로 알려내었다.
- 경기본부 주관의 을사늑약 100년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친일잔재 청산의 민족적 요구를 시위하는 장을 만들어 낸 점은 통일운동의 영역을 한층 넓혀낸 성과라 할 수 있다.

③ 극복점

■ 여론화 사업의 영역과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

안건3>

2005년 결산보고

[주문사항] 2005년 결산보고를 심의해 주십시오.

문서는 별지를 참고하십시오.>>

안건4>

임원선출의 건

[주문사항] 2006년 615경기본부의 상임대표님을 선출하여 주십시오

안건5>
회비 재조정 건

[주문사항] 회비재조정 안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1. 매월 고정 운영비 - 1,441,666원

과 목	내 역	금 액(원)	비 고
인건비	사무처장 상근비	800,000	
운영비	상임대표의 615남측위원회 공동대표 회비	41,666	연 50만원
	대량문자발송서비스 사용료	50,000	
	전화기	40,000	
	팩스 및 대량팩스 발송 서비스	30,000	
	사무실의 컴퓨터,프린터,팩스 등	200,000	10개월 할부(11월까지)
	토너	5,000	
	A4용지	15,000	
	사무실 이용료	20,000	2월부터
	복사(운영위, 공집 회의 자료 등)	40,000	
	경조사비	100,000	
	활동비	100,000	
총 합 계		1,441,666	

2. 현재의 회비 납부 구조

과 목	회비	인원수	금 액	비 고
상임대표	100,000	1	100,000	
운영위원	50,000	18	900,000	

공동대표	30,000	31	930,000	
합 계		**50**	**1,930,000**	
후원금			3,970,000	2005년 총합계
총 합 계			**5,900,000**	

※ 월 평균 회비 납부율 - 50%(965,000원)

※ 지금까지 후원금으로 사업비의 부족분을 충당

3. 대 안

- 회비는 상임대표 15만원, 운영위원 5만원, 공동대표 1만원 이상에서의 자율정액제(1만원 이상에서 해당 단체가 자율적으로 내겠다는 금액을 회비로 한다.)
- CMS를 실시하는 것은 좋은데 그 구체적인 모집방식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

안건6>
615경기본부 2006년 사업 계획

[주문사항] 2006년 사업 계획을 심의 및 승인하여 주십시오.

1. 2006년 사업 방향

1> 경기도의 면모에 맞게 6.15 경기본부의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관과 함께 하는 폭넓은 통일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제반 조건을 형성한다.
2> 6.15 공동선언을 일상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상설기구의 위상에 맞게 민족대단합을 위한 경기본부의 일상사업을 연구, 개발하고 실천해 나간다.
3>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가로막는 제반 정치적 사회적 장애물을 걷어내고 민족공조를 드높이고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4> 6.15 공동선언을 더욱 대중화하고 그 이행의 의지를 드높일 수 있도록 경기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사업을 전개한다.
5> 지역 차원에서 경기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류협력사업을 벌여내고 한민족으로서의 공동체 의식과 민족통일의 의지를 높여낼 수 있도록 한다.
6> 분단이라는 상황으로 인해 여전히 내포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반전평화사업을 벌여나간다.
7> 경기본부의 집행력을 보강하고 사업이 일상적이고 원활하게 전개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한다.
8> 시, 군 본부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방조하고 결속력을 높여나가는 방향에서 사업을 전개한다.

2. 2006년 사업 계획

1> 경기본부 조직 안정화 및 확대 사업

○ 목표

- 6.15 경기본부를 확대하고 민족적 단결을 실현하는 전민족적 통일운동 조직으로서 공동위원회의 위상

을 발전시켜 내기 위함.
- 공동선언을 지지 이행하는 세력의 압도적 우세를 보장하여, 조국통일의 시간표를 앞당겨내는 주체적인 민족역량을 형성하기 위함.
- 더욱 규모 있고 영향력 있는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함.

○ 방식

① 조직확대 소위의 활동력을 높여낸다. (회의구조의 정례화)

- 간담회 사업을 비롯한 미조직지역에 대한 정치사업을 적극화 하여 추진주체를 형성하고 조직을 결성할 수 있도록 방조한다.
- 미조직지역을 조직화할 수 있는 주체로 조직확대 소위의 인자를 더욱 다양하게 구성하고 확대사업을 활발하게 벌여나갈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한다. (미조직 지역에 인자를 발굴할 조직적 끈을 가지고 있는 경기지역 소재의 단체 또는 인사들로 조직확대 소위를 확대한다.)
- 현재 소속되어 있는 조직에 대한 결속력, 소속감을 높이기 위한 간담회 사업을 일상적으로 전개한다.

② 소속단위에 대한 일상적 간담회 사업

- 경기본부 소속 단위에 상임대표의 구심력을 높여내기 위한 방조를 공동집행위원장단에서 적극화 한다.
- 시기시기 마다 제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사업으로 추진하여 경기본부 사업의 방향과 내용이 일상적으로 공유되고 결합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한다.

▶ 간담회 시기
- 상반기 총회 전 제 단체 및 지역 본부와의 평가, 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
- 6.15 행사 전 통일정세 공유를 위한 간담회
- 8.15 이후 상반기 평가를 위한 간담회

③ 경기본부 후원회원 모집사업

- 공동선언을 지지하고 경기본부의 활동을 물적 심적으로 지지하는 세력을 적극 확보한다.
- 경기본부를 홍보하는 리플렛을 제작 배포하고 자체의 CMS를 구축하여 회원을 모집한다.
- 모집 시기 : 총회 이후 3월부터 꾸준하게 진행한다.
- 모집 방식 : 1. 경기본부와 시군별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모집하고 경기본부에서 취합하여 아래로 나누는 방식 / 2. 시군별 본부에서 모집하여 경기본부로 올리는 방식 / 3. 경기본부와 시군별 본부가 각자 모집하는 방식

④ 집행역량 확보 및 공동집행위원장단 회의의 안정화

- 사무처장 1인의 상근역량으로는 역부족이므로 일상 실무력을 보강하도록 한다.
  : 반상근 이상이 가능한 사무차장 확보.
- 공동집행위원장단 회의를 안정화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인자구성, 역할분공을 새롭게 한다.

⑤ 6.15 경기본부의 정책력과 집행력을 보강하기 위한 회의 구조의 다양화

- 6.15 경기본부 집행책임자 연석회의의, 시 군본부 집행책임자 모임, 정책간담회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경기본부의 정책력을 높일 수 있도록 회의구조를 다양화하고 주요 회의는 정례화 한다.

2> 교육 사업

① " 평화와 통일을 위한 경기 통일 아카데미" (가칭)

○ 목표

- 경기도민들에 대한 6.15 경기본부의 통일 교육적 기능을 개발, 실천하는 장이 되도록 한다.
-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을 대중화 하는 데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제 2의 6.15 시대에 풀어나가야 할 민족통일의 과제와 그 해법을 다양하게 모색해 볼 수 있도록 한다.
- 다양한 형태의 교육사업을 정례화 하고 이를 통해 경기본부의 영향력을 경기도 제 세력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 대상

- 경기본부 소속과 상관없이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의 일반 시민들.

○ 형태

- 강좌사업의 형태로 진행한다.
- 일회성 사업이 아닌 정례화된 사업으로 진행한다.
- 주 1회씩을 기본으로 4강(1달) 또는 6강(2달)으로 진행한다.
- 졸업자들이 모일 수 있는 동문회를 구성하고 후속사업과 재생산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
- 경기본부 주최를 기본으로 하되 가능하면 관 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연계를 맺어 규모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가능한 각 시군 본부 및 부문에서 함께 주관하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4강~6강 정도의 기획을 가지고 각 지역과 부문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한다.)

○ 시기

- 하반기 1회 : 9월~10월 즈음하여 1회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 정례화 된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 이후 평가를 통해 경기지역에 효과적인 사업의 형태로 새롭게 기획한다.

○ 내용

- 통일경제/ 민족문제/ 통일방안 / 민족의 문학예술 등.

② 북 문화유적 답사사업 통솔자 교육

○ 목적

- 북녘 문화유적 답사 및 아리랑 공연 관람시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하여 교육한다.
- 방북 행사가 이전에 비할 바 없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 추세에 맞게 민족대단결의 관점으로 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안내자를 전문적으로 육성하여 각종의 방북행사마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경기본부에서 기획하고 추진하는 각종의 대중사업과 남측에서 벌어지는 규모있고 대중적인 민족공동 행사 또는 통일행사에서 해설사, 안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 강사를 육성한다.

○ 대상

- 경기본부 소속 정책 또는 교육일꾼, 문예일꾼.

○ 내용

- 북녘의 문화유적 / 통일경제, 민족경제 / 통일방안 등

3> 6.15 기념사업

○ 목표

-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경기지역에서 더욱 대중화하는 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한다.
- 관을 비롯하여 제 세력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중적이고 규모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한다.
- 민족대단합의 기운을 높여내고 공동선언 이행의 실질적 국면을 열어나갈 수 있는 정치적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추진한다.
- 동포에 형제애를 확인하고 민족공조의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① 6.15 공동선언 발표 6돌 기념행사

· 시기 : 6.15 중앙행사 직전으로 한다. (6월 10일 또는 11일 - 토, 일요일임)
· 방식
  : 1안 - 경기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중적 형태의 문화제 행사로 진행한다.
  : 2안 - 작년과 비슷한 형태의 실내 기념행사로 진행한다.
· 주최 : 경기도와 경기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으로 추진한다.
· 참가조직대상 : 경기도민들과 민관을 가리지 않는 각계 인사, 단체들이 참가하는 규모있는 행사.

② 6.15 민족통일대축전 참가단 모집사업

- 6월15일이 주말이 아닌 평일이라는 조건, 수도권이 아닌 광주라는 조건이 많은 대중이 함께 하기는 매우 어려운 조건이기는 하나 최대한 많은 대중들과 함께 참가할 수 있도록 참가단 모집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4> 8.15 기념행사

① 각 시군본부별 통일행사

· 시기 : 8.15 직전 혹은 직후. (8월 12일, 13일, 19일 중 택 1)
· 방식 : 작년에 유례없이 많은 지역에서 통일행사를 벌어낸 성과를 이어 올해는 더욱 많은 시군 단위에서 통일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본부에서 적극 방조한다.

② 중앙행사 참관단 모집사업

- 현재, 남북해외 각 지역별로 진행할 것인지 작년과 같은 형태의 공동행사로 진행할 것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
- 어떠한 형태로 벌어지더라도 당일 행사에 경기본부 이름으로 참관단을 모집하여 참가하는 것으로 한다.

5> 북녘 유적답사 및 아리랑 공연 관람 사업

- 8월 10일 ~ 10월 10일 까지 북측에서 다시 재개하기로 계획 중임

· 목표
  : 민족 대단결 의식과 민족공조의 열기를 한층 높여내는 사업으로 추진한다.
  : 경기본부를 적극 홍보하고 후원회원(통일회원)으로 조직할 수 있도록 한다.
· 시기 : 8.15 이후 9월 중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한다.
· 주최 : 6.15 경기본부 (작년에는 우리겨레하나되기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것임.)
· 대상 : 경기본부 소속단체 및 인사 뿐 아니라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화대상을 넓힌다.
· 방식
  : 적극적인 방식으로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조직화 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 북 문화유적 안내자 교육을 통해 육성된 가이드를 활용한다.

6> 여론 캠페인 사업

○ 목표

- 우리민족끼리 평화와 통일을 일구어 나가는데 장애가 되는 각종의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거두어 내기 위한 여론화 사업.

○ 형태

① 반전평화 캠페인

- 6.15~8.15 기간을 활용한 캠페인

②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사업

③ 성명, 논평, 기자회견 사업

- 통일과 민족문제와 관련된 각종의 정치적 사안에 대해 성명 또는 논평 형태로 경기본부의 입장을 밝히고 도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알려낸다.
-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 단체들과 연대하여 기자회견 등의 형식으로 여론화 사업을 시기 적절하게 벌여낸다.

7> 북과의 교류 협력 사업

- 대북 지원사업의 형태로 다양하게 모색해 본다. (타지역의 사례를 연구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추후에 계획하는 것으로 한다.)

8> 경기본부 홍보사업

○ 목표

- 현재까지 폭이 경기도 전체를 아우를 만큼 넓지 못한 조건에서 경기도민과 제 단체 및 지역에 공동위원회의 존재를 알려내고 중요성을 홍보한다.

○ 홍보사업 형태

① 리플렛 사업 (현재 초안 완성됨)

· 내용 : 경기본부의 구성, 체계, 지향성을 대중들에게 알려낼 수 있는 내용으로 제작한다.
· 배포방식 : 다량 제작하여 시군별 본부, 경기본부 소속단위 등에 비치한다.
· 용도 : 후원회원 및 개별회원 모집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홍보자료집 발간사업

· 형식 : 소책자 형태로 리플렛 보다 규모 있게 제작한다.
· 내용 : 경기본부의 지향성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담고 각종의 민족공동의 주요 합의사항들이 실릴 수 있도록 한다.
· 용도 : 단체 및 지역의 조직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8> 정책사업

○ 목표

- 6.15 경기본부의 정책적 기능과 활동의 범위를 넓혀낼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획 활동을 전개한다.

○ 형태

① 경기도 통일 사업 모니터링

· 방식 : 도에서 진행하는 각종의 평화 및 통일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6.15 경기본부의 비판적 입장을 밝혀 여론화 한다.

· 목적 : 경기도 내에서 6.15 경기본부의 평화와 통일 관련된 영역에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관과의 비판, 협력적 관계를 열어 나가는 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경기 통일정책 토론회

· 경기도의 통일사업에 대해 점검, 평가하고 이후 방향을 밝혀내는 것을 목표로 관 뿐만 아니라 각계가 참여하는 형식으로 통일정책 토론회를 적절한 시기에 진행한다.

(시기, 방식, 내용 등은 추후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9> 기타 사업

- 중앙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지역화 : 6.15 기념일 제정사업 / 통일나무 심기 행사 / 아시아경기대회 공동응원단 모집사업 / 각종 중앙행사 참가 등.

안건7>

615경기본부 2006년 예산안

[주문사항] 2006년 예산안을 심의 및 승인하여 주십시오.

문서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